

- 2026년 5월 중 -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추진목표

- ◇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 투명·공정한 행정 구현

1 육·해상 지도·점검 계획

□ 봄철 관계기관 불법어업 합동단속 추진

- (점검기간) '26. 4. 15. ~ 5. 15.(1개월 간)
- (참여기관) 주관해양수산부 / 참여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방 정부 / 협조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등
- (점검내용) EEZ, 조업구역·금지구역 침범조업, 어구 초과부설, 어린 물고기 포획·유통 등 고의적 불법행위 및 어선사고 위험요소 등

□ 점경수역 출어선 안전관리 및 외국EEZ 침범조업 관리 강화

- (EEZ) 외국 EEZ* 경계선 근접조업 어선(대형선망·서남구저인망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EEZ 침범 조업 위험 사전차단
 - * 한·일 중간수역(89·91·358해구), 남해 EEZ(100·106해구), 울산 앞바다(93·94해구)
- (항해장비) ①GPS 위치오차 등을 고려하여 EEZ 경계선과 안전거리 유지, ②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혼용사용 금지
- (횡단선) 한·일 중간수역에서 연료절감을 위해 EEZ 횡단선 증가, 횡단 시 어구격납 철저, 지도선과 통신채널 구축하여 日지도선에 피랍 방지

□ 동해안 대게 불법어업 지도 · 단속

- 암컷,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판매, 암컷대게 통발미끼 사용 및 ‘대게·붉은대게류 통발사용금지구역(주11해역)’ 위반 등

< 중점 단속대상 >

- ▶ 암컷 및 체장미달(9cm이하) 등 불법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 ▶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 경북(경주~울진) 수심 420m 경계선 내 대게포획금지(연중, 주11해역)
- ▶ 그물코 금지 규격(통발 150mm 이하, 자망 240mm 이하) 위반
- ▶ 대게 TAC 초과어획, 어획량 미보고·거짓보고, 지정 판매장 위반(사매매) 등

□ 조업구역 이탈 및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등 지도점검

- (107도선) 경상북도-울산광역시 경계 107도 연장선 침범조업* 관련 권현망, 서남구·동해구저인망, 동해구트롤 지도점검

* 107도선 기준 권현망·서남구저인망 북상조업 금지, 동해구저인망 남하조업 금지

< 107도선 관련 경북-울산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 좌표 >

측지계	도-분 표기	도-분-초 표기
WGS84	35-39.070N, 129-27.067E	35-39-04.22N, 129-27-04.06E

- (128도 이동조업) 악천후 시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의 동경 128도 기준 동쪽 해역 조업 여부 및 허위 위치보고 등 지도·점검

* 부산·경남 출항하여 남해연안 인근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후 불법조업 집중관리

- (조업금지) 동해구트롤의 경북연안 근접조업, 서남해구중형저인망 (외·쌍끌이) 경남 홍도~남여도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여부 지도·점검

* 현측식 동해구트롤의 선미경사로 등 유사시설(탈부착식 핸드레일) 설치여부 병행점검

- (불빛금지) 야간 시간대, 선망(대형·소형·연안) 어업의 연중 불빛이용 금지구역* 내 불빛을 이용한 불법조업 여부 집중 점검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7의 주2)의 해역 및 추자도와 거문도 주위 7,400미터 이내의 해역

□ 어선 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지도·점검

- (D-MF/HF) 고의로 미작동하거나, 어선 상시전원이 아닌 배터리 모드로 작동하는 등 위치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어선 집중점검
 - * (설치대상) 기선권현망·잠수기 어업을 제외한 모든 근해업종
 - ** (미설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작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치소실) 대형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동절기(11~익년 3월)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치신호 연속소실* 어선에 대한 조기대응 실시
 - * 2개 종류 이상의 어선 위치발신장치 신호가 10분 이내 간격으로 수신되지 않을 경우
 - ** (운영) 위치소실 알람 발생시 대응시간 축소(60분→30분), 안전확인 불가 시 구조기관 즉시 통보
- (고장신고)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사실 미신고, 고장신고 이후 수리 등의 조치 미이행 시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고장·분실 시 지체없이 관할 해경에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등의 조치 필요

□ 면세유류 사후관리 점검계획

- (지역대상) 경북일원 / 농·수협 선박, 시설, 어업기계 등
- (점검사항) 면세유류 대상 선박 실제 존재·운영 여부, 공급기관 (농·수협), 주유소 관리실태 및 면세유 사용·공급현황 전반 점검
 - 영어사실확인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 등 면세유류 배정서류 전반 및 착색제 사용, 허가말소, 행정처분 등 변동사항 신고 여부 점검
 - * 공급 기준량 대비 실 수급량 집중 점검, 초과배정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여부 등

□ 어선 위치통지 제도 개선

- (주요내용)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조업자제 해역을 포함한 전 해역 내 풍랑·태풍특보 시, 위치통지 개선
 - * (일반해역) 매 24시간 이내 / (특정·조업자제해역) 매 12시간 이내 / (풍랑특보) 해역 구분 없이 매 12시간 이내 / (태풍특보) 해역구분 없이 매 4시간 이내

□ 구명조끼 상시착용

- (주요내용) 기상특보 및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노출된 갑판에 있을 시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 확대* 추진

* (기존) 특보 시 노출갑판, 특보 무관 2인 이하 → (변경) 모든 어선원 상시착용(26.7.1.)

□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실시

- (주요내용)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 등록하도록 하여 안전한 어선 건·개조 유도 및 불법 증·개축 차단

- 어선검사 후 상태유지 의무*가 선주와 건·개조업자까지 확대되고 위반시 영업 정지 또는 취소 등 처분** 규정이 신설

* (기존) 어선소유자 → ('25.12.21~) 어선소유자+건조·개조업자(「어선법」 제9~10조 신설)

** 등록기준 미달, 변경등록 미이행, 어선 불법 개조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 등록취소

□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자적 고장·분실 신고방법 도입

- (주요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발생 시 파출소 등 현장방문을 통한 신고에서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신고 서비스 확대 시행('25.09.15~)

*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3조

-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http://coss.kcg.go.kr> 또는 앱) 접속, 어선위치 발신장치 고장 신고 탭 이용, 고장·분실·수리연기 신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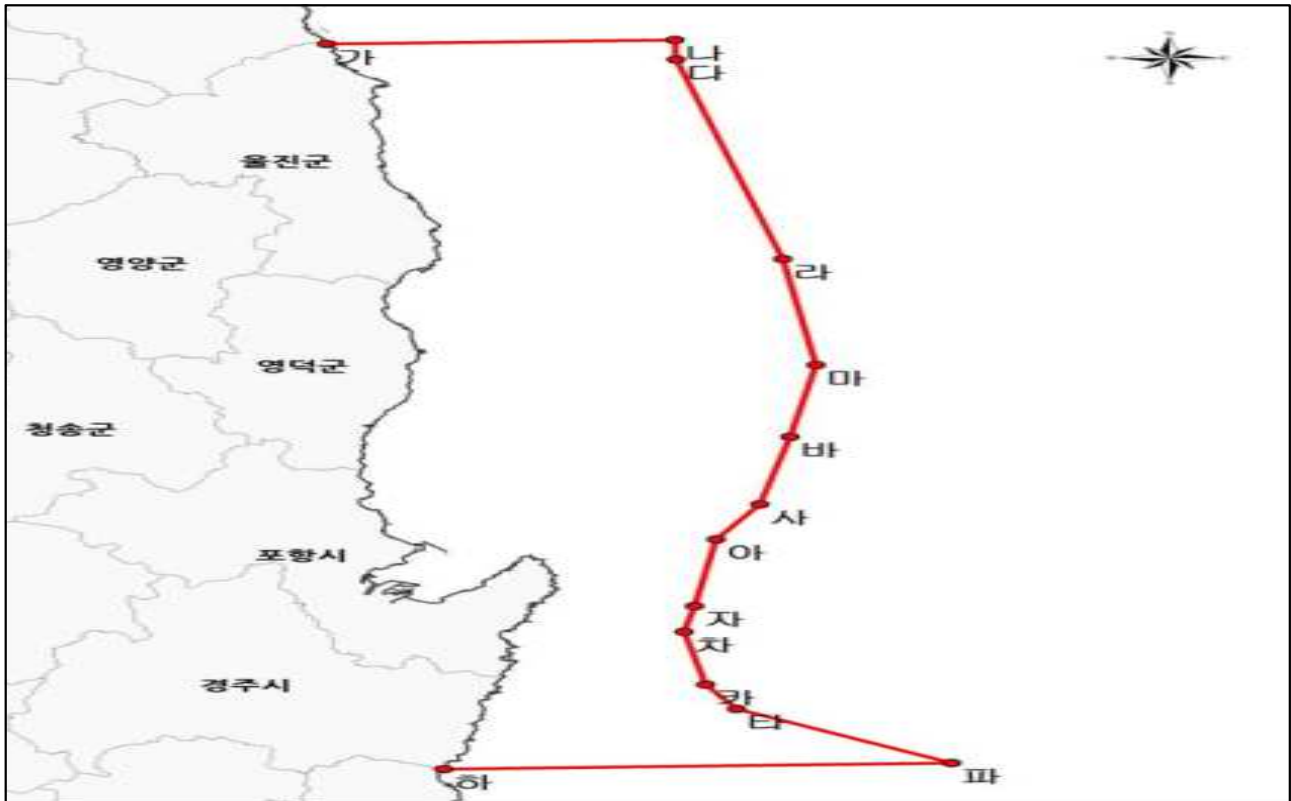
□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제도

- (신고대상) 조업구역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 금어기·금지체장 등 포획채취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 (신고방법) 1588-5119(전화), 인터넷(동해단 홈페이지), 모바일(카톡 채널, 국민신문고 등)

- (포상금액)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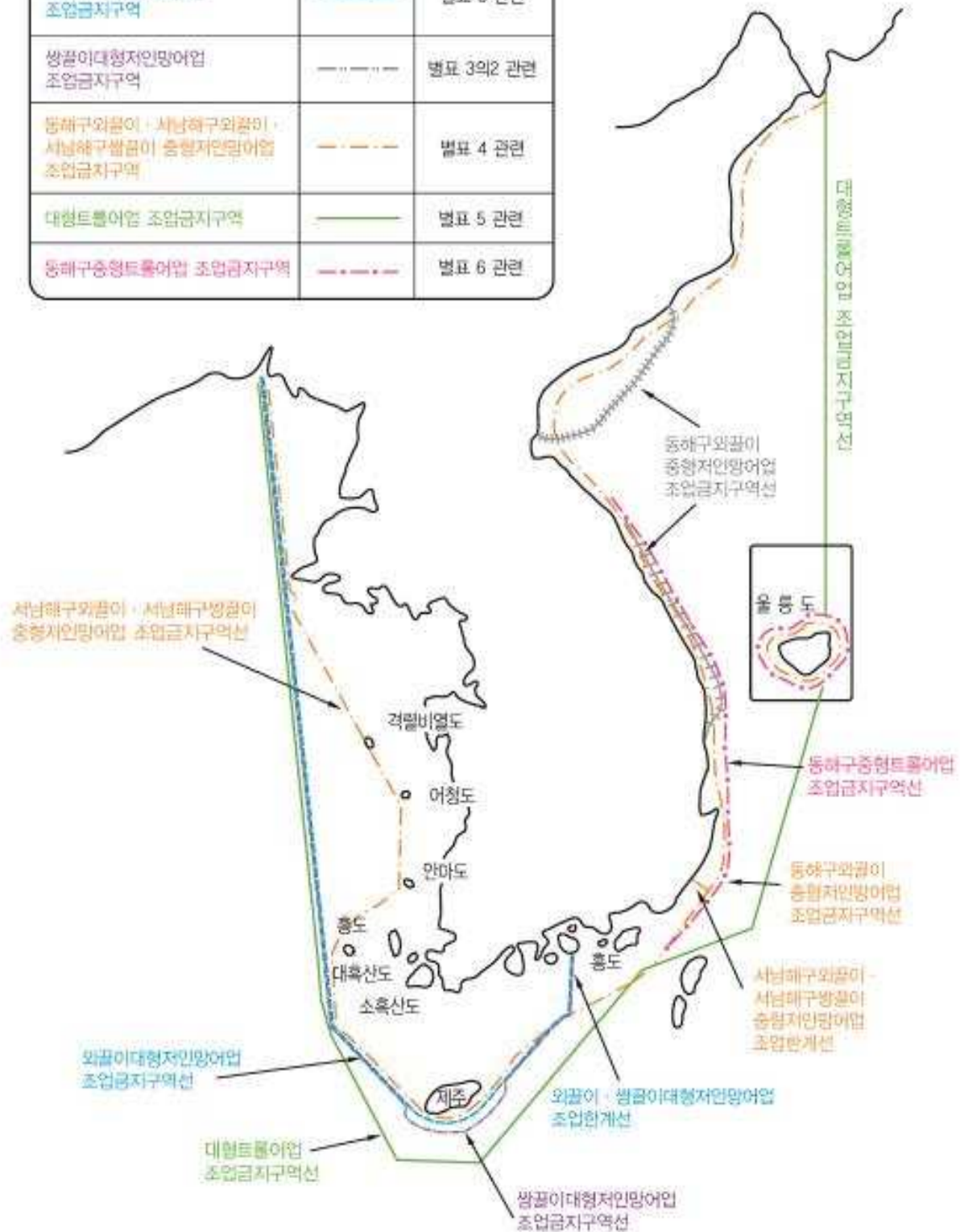
[부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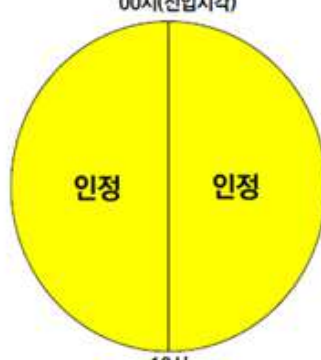


○ 세부 좌표(경위도)

- 가.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21분52초
- 나. 북위37도08분37초 동경129도45분12초
- 다. 북위37도06분12초 동경129도45분12초
- 라. 북위36도41분27초 동경129도51분24초
- 마. 북위36도28분18초 동경129도53분08초
- 바. 북위36도19분30초 동경129도51분06초
- 사. 북위36도11분13초 동경129도48분48초
- 아. 북위36도06분57초 동경129도45분44초
- 자. 북위35도58분46초 동경129도44분01초
- 차. 북위35도55분37초 동경129도43분14초
- 카. 북위35도49분04초 동경129도44분27초
- 타. 북위35도46분01초 동경129도46분21초
- 파.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30도00분15초
- 하. 북위35도39분00초 동경129도26분52초

어업별	범례	비고
외곽이대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3 관련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3의2 관련
동해구외곽이·서남해구외곽이·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4 관련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5 관련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6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평시	일반 해역	1회	매일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후 통지 	1회	최초 통지는 출항시각 기준 24시간 이내,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24시간 이내 * 2회차 통지는 1회차 통지 기준 24시간 이내, 3회차 통지는 2회차 통지 기준 24시간 이내, 이후 동일한 방법 
	특정 해역	3회	매일 출항시각 기준 6시간 후 통지, 2·3번째는 이전통지와 6시간 이상 간격으로 통지 	2회	최초 통지는 특정해역 진입 후 12시간 이내,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12시간 이내 
	조업 자제 해역	2회	매일 출항시각 기준 8시간 후 통지, 2번째는 이전통지와 8시간 이상 간격으로 통지	2회	최초 통지는 조업자제해역 진입 후 12시간 이내,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12시간 이내
기상 특보 시	풍랑 특보	평시+2회 *ex) 일반해역 3회(1+2)	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12시간마다 통지 (전후 30분 이내만 인정) 	전해역 2회	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12시간 이내 (평시 위치통지 의무는 면제) 
	태풍 특보	평시+6회 *ex) 특정해역 9회(3+6)	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4시간마다 통지 (전후 30분 이내만 인정)	전해역 6회	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4시간 이내 (평시 위치통지 의무는 면제)

점검대상	점검내용	제재사항
관리기관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카드 등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②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어업인	①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취득·양도 또는 사망·이어(離漁)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동내용 미신고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③ 어업기계 및 선박의 사용실적,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의 생산실적을 최종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④ 어업용 외 용도 사용(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무허가 어선 및 시설 등)으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유 발생 시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 상기 4가지의 사유로 면세유 사용 불가 시, 그 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	
	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그 외, 면세유 사용 불가 기간 안내 ◆ - 어업 등에 대한 제한(취소, 감척 등)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 「수산업법」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 기준)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석유 판매업자	①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 신청	감면세액 추징
	②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세액 신청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감면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 관리기관 중앙회는 면세유 판매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일로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불가(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		

해양수산부
규제-4신

안전·도약에 앞장서는
해양 경찰의 국민사랑

구명조끼·구명의 의무착용 강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공포 '22.10.18., 제24조 및 제32조 공포 3년 후 시행)에 따라 '25.10.19.부터는 구명조끼·구명의 의무착용이 확대*되고, 선장에게도 승선자의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부과** (과태료 300만원 이하)됩니다.

* 제24조 (기존) 태풍·풍랑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의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
(개정) 기존 + 승선인원이 소규모인 어선(2인 이하, 시행규칙 개정 예정)

** 제32조 (기존) 구명조끼 미착용자
(개정) 기존 + 승선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선장

해양수산부

붙임6

포획 · 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 홍보물

종 명	금지 체장	금 지 기 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꽃게		6.4cm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의 암컷 : 연중포획금지					6.21~8.20*	해당기간 중 어획량의 5%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 일부업종은 제외(시행령 참조)					*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에따라, 기타 구역별 금지기간은 고시 참조.
대게		9cm	대게의 암컷 : 연중포획금지					6.1~11.30					등경131도30분 이등수역은 6.1~10.31, 기타 구역별 금지기간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참조	
대하		-					5.1~6.30							
민꽃게		-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민꽃게의 암컷 : 연중포획금지											
붉은대게		-	붉은대게의 암컷 : 연중포획금지					7.10~8.25						강원도 연안재방어업은 6.1~7.10
가리비		-				3.1~6.30*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 주7)의 해역에 한정으로 변경
기수채취		각장 1.5cm												
마대 오분자기		각장 4cm (제주도산 한정)												
오분자기		각장 4cm (제주도산 한정)						7.1~8.31 제주특별자치도 한정						
새조개		-						6.16~9.30						다만,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무안, 영광 제외), 제주는 6.1~9.30
소라		각고 5cm (제주도, 울릉도, 독도산은 7cm)						전남 여수시 삼산면 6.1~6.30 제주도 6.1~8.31(8월 7.1~8.31) 울릉도, 독도 6.1~7.31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 참조
전복류		각장 7cm (제주도산은 10cm)								9.1~10.31				제주특별자치도는 10.1~12.31
기조개		각장 18cm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산에 한정)						7.1~8.31						
코끼리 조개		-					5.1~6.30 강원도 및 경상북도 한정							
낙지		-						6.1~6.30	사·도지사가 4.1~9.30까지 기간중 1개월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고시하는 경우 그기간 * 으로 함					* 경남 6.16~7.31, 전남, 경기 인천 6.21~7.20, 충남(거포리만, 근소만(북쪽) 4.1~5.31
대문어		체중 600g												
살오징어		외투장 15cm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제장의 살오징어를 20%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제외					4.1~5.31					근해채취기, 연안복합어업, 청정어업은 4.1~4.30	
주꾸미		-						5.11~8.31						
해삼		-						7.1~7.31						
참뽕어		-					5.16~6.30	사·도지사가 5.1~9.15까지 기간중 40일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고시하는 경우 그기간 * 으로 함					* 경남, 전남 5.24~7.8 제주 6.1~9.15	
넙미역		-							9.1~11.30 제주 특별자치도 한정					* 다만, 제주도(사) 5.1~11.30 기간 중 3개월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기간으로 함
우뚝 가사리		-	~3.31									11.1~		
툰		-	~1.31									10.1~		

국민의 힘
정국행정

★내 옆에 정부혁신★

어린물고기

잡지도, 사지도, 팔지도, 먹지도 맙시다!

(2026년 1월 제작)



수산자원의 포획 · 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불법 포획 · 채취한 자,
불법 포획 ·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 · 가공 · 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7조, 제64조 제1호, 제2호

신고포상금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어선원 대상,
사법처분 최고 600만원, 행정처분 최고 400만원 지급
※ 불법어업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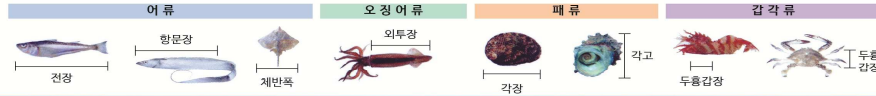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신고센터 1588-5119
동해어업관리단 051-410-1030~32, 35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속도

* 별도 금지 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참조 * 다만, 갈치, 고등어, 참조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6943호, 2016.2.3)에 따라 금지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illegible]





청렴 서한문

청렴한 바다, 원칙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어업인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 오성현입니다.

매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현장을 지켜 오신 어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26년을 맞아, 국가비전이자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무엇보다 청렴과 공정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어업인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모든 지도·단속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법과 원칙만을 따르며,
자의적 판단과 관행을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둘째, 부당한 청탁, 금품, 편의 제공, 특혜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며,
위법·부당 행위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업무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의혹 없는 깨끗한 수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이며, 공정은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청렴한 행정으로 어업인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어업 질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여러분과 함께 현장의 신뢰를 쌓고,
원칙이 바로 서는 수산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늘 안전한 조업 환경 속에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 오성현